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
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심미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심미경, 강석주, 경기문,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지향, 김춘곤,
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영한, 박춘선,
박칠성, 박환희, 서호연,
신복자, 이경숙, 이상욱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환,
이희원, 정지웅, 채수지,
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용어 띄어쓰기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, “건립 기금”을 “건립 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건립기금”을 “건립 기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<u>건립기금</u>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<u>건립기금</u>(이하 “기금“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----- ----- <u>건립 기금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립 기금</u>----- -----.</p>